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공고 제2021-05호

2022년도 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

사업설명회 개최

2022년도 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할 공동훈련센터 및 예비 공동훈련센터·파트너훈련센터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역량있는 훈련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
2021년 9월 30일

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장

주의 : 사업 및 설명회 관련 내용은 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홈페이지 (http://www.sjhrd.or.kr/) 공지사항 확인

'22년 지산맞 인력양성사업 사업설명회 개최 계획

1 목 적

○ 2022년 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안내 등을 통해 내실 있는 공동훈련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원활한 사업운영 도모

2 개 요

○ 일시 : 2021.10.05.(화), 16:00 ~ 17:30

○ 장소 : 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회의실

○ 참석대상 : 고려대학교 세종HRD센터, 공동훈련센터 및 파트너훈련기관 신청예정자, 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인력양성팀 등

○ 주요내용

- 공동훈련센터 및 파트너훈련기관 선정심사 모집 공고 안내
-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 등

○ 참가방법

- 신청서(별첨) 작성 후 2021.10.04.(월) 12:00 까지 이메일(sjrsc@sjhrd.or.kr) 회신

3 세부일정

시 간			내 용	비 고
부터	까지	소요		
16:00	14:10	10′	▪ 인사말씀	
16:10	17:00	50′	▪ 공동훈련센터 및 파트너훈련기관 선정심사 모집 공고 안내 ▪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 등	
17:00	17:20	20′	▪ 질의 응답	
17:20	17:30	10′	▪ 마무리말씀	

4 모집공고 안내

1. 사업목적

○ 지역 기업 및 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고,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고용률 제고

○ 지역 중소기업의 훈련수요를 충실히 반영하여 훈련 참여율을 제고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경쟁력 제고

2. 공동훈련센터 및 파트너훈련기관의 역할 및 구분

□ 공동훈련센터 선정의 의의

○ 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에서 가장 핵심역할인 인력양성을 공동훈련센터에서 담당

○ 동 사업의 성과인 훈련을 통한 취업 연계 및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역량 있고 우수한 훈련센터(기관) 참여가 중요

□ 역 할

○ 공동훈련센터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실시한 지역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인력양성을 위해 기업과 협약 체결, 교육훈련 실시, 채용지원 등 역할 수행(인력양성 실시 주체)

○ 지역·산업 수요에 맞추어 일차적으로 인력양성을 책임질 수 있는 공동훈련센터와 동 센터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협력하여 지역의 전체 교육훈련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참여 훈련기관간의 역할 분담 필요

□ 구 분(역할에 따라 '공동훈련센터' 와 '파트너훈련기관' 으로 구분)

구 분	기 능	상호관계	지원내용
공동훈련센터	지역내 주된 훈련공급	파트너훈련기관선도	인프라지원금/훈련비용
파트너훈련기관	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기 어려운 직종에 대해 공동훈련센터와 협업하여 훈련공급	공동훈련센터와 협업 (공동훈련센터 사업계획에 포함)	훈련비용

3. 공동훈련센터 및 파트너훈련기관의 역할 및 구분

○ **(절차)** 지역별 인자위에서 공동훈련센터 등 선정 공고 → 사업설명회 개최 →서류심사 → 현장(인터뷰)심사 → 인자위 심의·의결 순으로 진행

【공동훈련센터 / 파트너훈련기관 선정 절차】

①	공동훈련센터 등 선정 공고 (09.17.)	■ 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
②	설명회 개최 (10.05.)	■ 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
③	평가단(심사위원) 구성 (~10.06)	■ 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– 실무협의회에서 협의 (5인 이상)
④	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(~10.18.)	■ 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– 공동훈련센터/파트너훈련센터
⑤	1차 심사(정성평가) (10.26.예정)	■ 평가단(서류심사와 인터뷰 심사 병행)
⑥	2차 심사(정량평가) (10.26.예정)	■ 평가단 (서류심사 및 현장 심사)
⑦	지역인자위 심의·의결 (11.09.예정)	■ 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
⑧	지역인력양성계획 수립 (~11.12.)	■ 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– 선정된 공동훈련센터 사업계획을 수정·보완하여 수립

5 기타 유의사항

1. 과정 설계 · 운영시 인자위 자율성 확대

□ **지역인자위가 훈련과정 설계 · 심사 · 실시를 주도하여 지역 · 산업계 수요에 즉각적 대응**

○ 당초 심사 시점에 따라 정기 · 수시로 분류하던 체계를 벗어나, 훈련과정 선정 · 심사 시 인자위의 실질적 자율권 보유 여부에 따른 **정기-수시(자율) 과정 체계**로 개편

○ 인자위별 쿼터액 중 **70% 내외는 정기과정**으로 전년도 말 사전승인하고, 잔여분 **30% 내외는 수시(자율)과정** 운영 시 활용

<'22년도 세종지역 예산범위>

구분	훈련비용(천원)
세종	100,000

* 수시(자율)과정 예산은 지역인자위에서 훈련의 긴급성 · 중요도를 고려하여 배분하되 **30%내외(±20%)를 활용**하는 것을 권장

○ 공동훈련센터별 연인원 목표는 최소 600명 이상이 되어야 하며, 인자위는 수시(자율)과정의 목표인원을 **30% 내외(±20%, 60명~300명)**로 계획한 후 「지역 인력양성 기본계획」에 기재

□ **협약기업 관리 내실화 및 훈련-취업 연계를 높이기 위한 협약기업 비율 설정**

○ 공동훈련센터는 **협약기업 165개 이상**으로 하되, 채용예정자 훈련 취업률, 기업수요 맞춤 훈련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**10인 이상 협약기업의 비율**은 전체 **협약기업의 60% 이상**이어야 함

□ **훈련단가 추가 지원비율 제고를 통한 고품질 훈련과정 육성**

○ 고숙련 · 신기술, 지역특화 · 위기 · 전략훈련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한 NCS 수준별 훈련단가 지원율 차등 적용

* 지역위기·전략훈련의 경우, 해당 지역인자위에서 제시하는 자료를 근거로 심사위원회에서 타

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인정 여부 결정

○ 훈련단가는 NCS 기준단가의 100~300%이내 지원

- **(NCS 2~4수준 이하)** 일반과정 : 100~150%이내
- **(NCS 5수준 이상)** 신기술(4차산업*) 훈련 : 100~300%*이내('NCS 5수준 이상 and 신기술(4차산업) 훈련'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)
- **(NCS 5수준 이상)** 지역특화** · 위기 · 전략산업 과정 : 100~200%이내('NCS 5수준 이상 and 지역특화·위기·전략산업'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)

* 지역 · 산업맞춤형인력양성 운영규칙 개정('21.04.26.) 및 타 사업과 형평성 반영

(4차산업 신기술분야*) 자율주행차, 의료기기, 전기수소차, 바이오, 시스템반도체, 지능형로봇, 신재생에너지, 서비스플랫폼, 인공지능, 친환경 소재 및 자원순환, 실감형콘텐츠, 드론, 빅데이터, 블록체인, 스마트시트, 재난안전, IoT, 5G+, 이차전지, 스마트제조

*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4차 산업혁명분야 참고(중소벤처기업부)

○ NCS 수준별 훈련과정 편성방법

- 훈련수준은 훈련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수준이며, 훈련과정 편성을 위한 능력단위 선정은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훈련내용과 연관이 있는 모든 직종의 과정/과목(능력단위)에서 선정·편성이 가능
- 다만, 주(전공)직종내 편성된 과정/과목(능력단위)의 총 훈련시간 비율이 유사직종 또는 타직종에서 가져와 반영한 과정/과목(능력단위)의 훈련시간 비율보다 높아야 됨
- 또한, 수준별 훈련계획(시간)은 훈련생의 수준 및 훈련기준에 정해진 능력단위별 훈련시간을 고려하여 설정해야 함

2. 내실있는 공동훈련센터 선정

□ 신규 공동훈련센터 선정 내실화

○ 고숙련·신기술, 지역특화·위기·전략훈련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한 NCS 수준별 훈련단가 지원율 차등 적용

□ 공동훈련센터 및 파트너훈련기관 참여요건

○ **(공동훈련센터)** 반환채권 확보를 위하여 '이행보증보험증권' 또는 '지급보증서' 제출이 가능한 기관(신규, 기존기관)으로 참여요건을 명확히 하고*, 성과평가 미흡 기관 훈련참여 배제**

* 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운영규칙 제35조(공동훈련센터 선정) 및 제49조(공동훈련센터 지원금의 신청 등) 제4항의 '이행보증보험증권 등' 관련

** ① 최하위 등급을 받고 다음연도 훈련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, ②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성과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☜ 지역산업맞춤형 운영규칙 개정(21.04.26.)

○ **(파트너훈련기관)** 직업능력심사평가원(한국기술교육대학교)의 훈련기관 인증평가 결과, 1년 이상 인증(폴리텍 등 공공직업훈련시설 제외) 받은 기관만 참여 가능

3. 훈련과정 선정 및 훈련수준에 따른 인프라 지원

□ 우선 순위를 반영한 훈련과정 선정

○ 지역·산업계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위기·전략분야, 신산업·신기술, 취약계층 특화과정, 정부 정책 연계과정 등 중점 선정

〈 우선순위 고려사항 〉

1) 해당 지역 과소공급 과정(훈련수요를 반영)
2) 지역현안 및 주력산업 관련 등 지역 인자위가 필요하다고 심의·의결한 과정
3) 취업률(채용예정자), 수료율, 전년도 훈련규모 등 실적을 반영
4)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·신기술 과정, 취약계층(중장년, 경단녀 등) 특화과정
5) IT·ICT서비스·SW개발, (정보)통신업, 콘텐츠·방송산업 등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일자리 인력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직종

○ 경영·회계·사무(NCS 중분류 01~03) 등 민간훈련시장에서 공급이 원활한 과정은 훈련비 기준단가를 100%로 고정하고 전체 훈련과정(원격 훈련과정 포함) 수의 10% 이내로 제한*

* 안정적인 신규사업 정착을 위하여 중장년 ICT 특화 훈련과정은 제한 없이 허용(전체 훈련과정 대비 10% 이내 과정 수 산정에서 제외)

□ 훈련성과 제고를 위한 훈련과정 선정

○ 취업률, 수료율 및 전년도 훈련 규모 등 실적을 반영하여 우수한 훈련과정 중점 선정

○ 채용예정자 훈련과정 중 취업률이 70% 이상인 우수과정만 승인(취업률 미담보 시 해당과정 선정 불가)

- 채용예정자 훈련과정 취업률은 훈련종료일 기준으로 데이터를 추출하여 최근 2년* 과정별 취업실적(훈련종료일 기준 3개월 이내 취업한 자)을 산술평균하여 결정

*** 취업률 산정 기간 : 2019.07.01. ~ 2021.06.30.**

<취업률 산술평균 예시>

· 최근 2년(2019.07.01. ~ 2021.06.30.)이내 1개 채용예정자과정이 있는 경우 : 해당 과정 취업률 반영

· 최근 2년(2019.07.01. ~ 2021.06.30.)이내 동일한 2개 채용예정자과정이 있는 경우 : 해당 2개 과정에 대한 산술평균 취업률 반영

- 채용예정자과정 실적이 없는 수도권 및 광역시 소재한 폴리텍대학, 한국기술교육대학교, 신규 공동훈련센터가 신규 채용예정자과정 도입 시, 해당 훈련기관에서 운영한 내일배움카드제 등 유사훈련과정(NCS 소분류 기준)의 취업률이 70% 이상인 경우 승인

- 동일·유사 훈련과정이 없는 '22년 신규 채용예정자과정 개설 희망시에는, 기관별 2개년 채용예정자 평균취업 실적(2019.07.01. ~ 2021.06.30.)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승인 결정

<기존 공동훈련센터 취업률 산정기준 예시>

– 유형 1 (최근 2년 동일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을 신청한 경우) –

· (예시 1) 최근 2년 이내 취업률이 70%(산술평균) 이상 과정 → 심사를 통해 승인 가능

· (예시 2) 최근 2년 이내 취업률이 70%(산술평균) 미만 과정 → 불승인

– 유형 2 (신규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을 신청한 경우) –

· (예시 3) 최근 2년 이내 취업률 70%(산술평균) 이상 과정과 동일 과정으로 간주할 수 있는 과정
→ 심사를 통해 승인 가능

· (예시 4) 최근 2년 이내 취업률(산술평균) 70% 이상 과정과 동일 과정으로 간주할 수 없는 과정
→ 기관별(공동훈련센터별) 2개년 평균 채용예정자 실적 및 훈련과정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

※ 동일 과정 기준 : 교과목·시간을 고려했을 때, 교과목 내용 및 시간 모두 80% 이상 일치하는 경우 동일 과정으로 간주

- 채용예정자 훈련과정별 계획 인원의 80%(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) 채용약정서 필수 제시

- 채용예정자훈련 인식개선(’ 훈련-취업 ‘)을 위한 서류 강화(향후 훈련실시 신고 시, ’ 채용예정자훈련 운영안내 확인서* ‘ 필수 첨부)

  *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(공동훈련센터)가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훈련개시일 전일까지 【붙임 3】 채용예정자훈련 운영안내 확인서 서식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정보망(이하 "HRD-Net"이라 한다)에 실시 신고

□ 현장수요를 반영한 적정 훈련기간 설정

○ 훈련 수요조사 결과, 기업 및 훈련생 만족도 등을 반영하여 적기에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훈련기간(720시간 이내) 설정

<예외 사항>

□ 채용예정자 과정 중 최근 2년(2019.07.01. ~ 2021.06.30.) 취업률(산술평균)이 70% 이상인 과정에 한하여 지역 내 훈련 수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20시간 초과 과정 일부 허용

○ 채용예정자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기간은 1개월 이상, 월 평균 훈련시간 120시간 이상이어야 함

□ 훈련 수준에 따른 인프라 지원

○ **(운영비)** 인건비*, 일반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라 적정성 검토

*** 인건비 산정 기간(훈련종료일 기준) : 2019.10.01. ~ 2021.09.30.**

○ **(시설, 장비)** 기존 지원 시설(장비)의 활용현황 및 계획 등을 파악하여 지속적인 활용도(운영과정과 연계성) 및 신규 신청시설(장비)의 경우 기존 지원 인프라와 중복지원 여부 중점 확인

- 기존 공동훈련센터의 경우 시설 · 장비비 등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 지원된 시설장비 목록 및 활용현황, 활용계획 등을 '22년 사업계획서에 포함

- 훈련 시설(장비)비 중복지원* 여부 확인 철저

  * 기존 공동훈련센터의 경우 시설 · 장비비 등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, 기지원된 시설 · 장비 등 목록을 제출받아 심사 시 활용

- 비대면훈련을 위해 훈련강사에게 필요한 Zoom, 마이크 등 장비 지원(훈련생

에게 필요한 카메라 등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)

〈 훈련시설·장비·프로그램개발비 세부 지원기준 〉

① (훈련시설비) 기존 공동훈련센터의 지원받은 훈련시설을 활용하고, 신규 공동훈련센터의 경우 엄격한 심사를 통해 훈련시설 지원은 개보수 비용 등*에 한해 지원

* 훈련장비 설치를 위한 훈련시설 개보수 비용 등

② (훈련장비비) 고숙련(NCS 5수준 이상), 신기술(4차 산업)* 훈련, 지역전략산업 · 지역특화산업 직종(고수준), 프로그램개발 반영 훈련과정 등에 소요되는 장비 우선 지원하고, 활용 정도를 고려하여 선별 지원(기존 훈련과정은 지원받은 장비 활용)

* 신기술 분야(4차 산업분야) :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4차 산업혁명분야 참고(중소벤처기업부)

4. 중장년(신중년) ICT 특화과정 편성

○ **(훈련대상)** 훈련실시일 기준 만 45세 이상 중장년*

* 훈련 개설 촉진을 위해 과정별 훈련실시인원 중 30%까지 만 45세 미만 훈련생 참여 허용

○ **(인원목표)** 2,760명('21년 기준, 69개 공동훈련센터 × 40명)

- 개별 공동훈련센터당 최소 40명 이상 훈련 실시

※ 단, 지역 내에서 A공동훈련센터가 B공동훈련센터 훈련물량을 소화할 경우는 B공동훈련센터 훈련 미실시 가능(인자위 승인 필요)

○ 훈련과정은 정기 향상과정으로 설계하고, 훈련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설계

○ 경영・회계・사무(NCS 중분류 01~03) 훈련과정 훈련비는 NCS 기준단가의 100%로 고정

5. 다양한 훈련방식 도입

□ 비대면훈련 활성화

○ **(훈련방식)** 집체훈련 방식 이외에도 비대면훈련과 프로젝트 실습 등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훈련방식을 자유롭게 운영* 가능

* 지역지원부-2533('20.08.28.) "코로나19 관련 '20년 하반기 집체훈련이 원격 대체 보완 지침" 준수

○ **(유형 및 내용)**

유 형	내 용	비 고
❶ 원격보조훈련	한기대 온평원 STEP 온라인 강의실을 통해 운영하는 방식	집체훈련의 원격대체 훈련
❷ 쌍방향훈련	쌍방향 플랫폼(Zoom, Skype 등)을 이용하여, 심사 시 별도 지원 단가를 산출하여 실시하는 훈련	
❸ 원격훈련	자체 원격장비·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주 기준단가로 실시하는 훈련	기존 원격훈련

○ **(비대면 훈련 활성화 정책 지속)** 비대면 및 혼합훈련은 장기적으로 활성화

- 콘텐츠 내용의 적정성 등의 판단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원격훈련심사센터 심사 결과로 대체하며, 기 승인받은 과정 중 유효기간(2년) 내의 과정만 신청 가능 (승인 관련 증빙 첨부, ❸ 원격훈련에 한함)

○ **(집체훈련의 원격대체 지속 허용)** 기존 원격훈련과 원격 도구를 활용한 대체 훈련을 포함하여 훈련 요건, 과정의 적절성 등을 사업계획 심사 시 승인

- **(콘텐츠 심사)** 인프라 보유 여부, 관리시스템 담당자 구성 여부 등 콘텐츠 내용 심사는 심평원 심사로 대체(❶ 원격보조훈련에 한함)
- **(원격대체 승인)** 집체훈련의 훈련 품질 및 동일성이 유지되고, 훈련생 및 교·강사, 공단 지부·사와 사전 협의 및 승인 후 진행(❶ 원격보조훈련, ❷ 쌍방향 훈련에 한함)
- **(정원 변경 불가)** 쌍방향 및 원격보조훈련은 정원 변경이 불가하며 비대면 훈련 실시가능 여부 확인 및 승인은 공단 지부·사에서 실시(❶ 원격보조훈련, ❷ 쌍방향훈련에 한함)
- QR코드 · 신호 출결 및 출결방식 간소화(①최초 입실, ②최종 퇴실) 실시

□ 원격훈련과정 운영

○ **(훈련형태)** 원격훈련 과정의 경우에도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과정 편성

- 경영·회계·사무(NCS 중분류 01~03) 등 민간훈련시장에서 공급이 원활한 과정은 전체 훈련과정 수의 10% 이내로 제한
-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은 혼합훈련(원격+집체)은 가능하나, 원격훈련으로만 구성된 과정은 실시 불가
-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원격훈련심사센터에서 기 승인받은 과정 중 유효기간(2년) 내의 과정만 신청 가능(승인 관련 증빙 첨부)

○ 원격훈련 단가

(단위: 원)

훈련과정 심사 등급	인터넷	스마트		우편
		교수설계유형1)	기술기반유형2)	
A	6,160	12,100	18,150	3,960
B	4,180	8,140	12,210	3,080
C	2,970	5,940	8,910	2,170

1) 교수설계유형 훈련: 플립러닝, 참여활동형 훈련 등 특성화된 교수 설계 방법을 적용한 훈련

2) 기술기반유형 훈련: 위치기반서비스, 가상현실 등 스마트기기의 기술적 요소를 활용한 훈련

※ 공공콘텐츠(STEP 무료 콘텐츠)를 활용하는 경우 별도 심사등급 없이 시간당 4,700원 단가 산정

○ 과정 인정요건

구분	훈련과정 인정요건
원격훈련	○ **인터넷 원격훈련** –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사전 심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콘텐츠로 운영할 것 – 콘텐츠 분량이 8시간 이상일 것 * 2개 이상의 콘텐츠로 구성된 경우 개별 콘텐츠의 최소 분량은 4시간 이상일 것 – 학습목표 및 학습계획 등이 제시되고, 학습목표 및 내용에 적합한 교수 및 학습활동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 – 월 1회 이상 훈련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것 –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1의 원격훈련 인정요건을 갖출 것 – 훈련비 지원금은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3조를 따른다.
혼합훈련	○ **집체+원격훈련**

※ 사업계획 승인 후 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시설·장비·인력 등 "훈련방법에 따른 과정인정 요건"에 부합하는 과정만 관할 지부·지사에서 HRD-Net 훈련과정 승인